

#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인제, 김제리, 김태수, 문장길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재혁, 송정빈, 양민규, 유정희, 이광성, 이상훈, 이영실, 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‘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’은 관할 소방서의 ‘현장지휘팀장(소방경)’이 지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지휘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그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어야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최적의 지휘능력이 발휘된다고 볼 때 지금의 지휘팀장체계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서울시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(소방령) 또는 담당팀장(소방경)’의 복수직급 지휘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을 관할 소방서 ‘현장대응단장’ 또는 ‘담당팀장’이 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라목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(또는 담당팀장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현장지휘관"이란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(이하 "소방재난본부"라 한다)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</b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(현행과 같음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라.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: 관</b></p>
<p><b>관할 소방서 담당팀장</b></p>	<p><b>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(또는 담당</b></p>
<p>마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팀장)</b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